세계지방자치동향



- (독일) 독일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(Nordrhein-Westfalen) 주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재원분담
- (미국) 텍사스 주 보육 서비스 재원부담 구조 및 방식 :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(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, CCDF)
- (일본) 일본의 아동 보육 관련 중앙정부-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구조
- (일본) 일본의 아동·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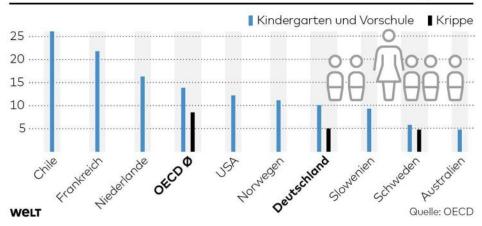


독일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(Nordrhein-Westfalen) 주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재원분담

독일 영유아보육 개요 및 현황

- 독일의 영유아보육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, 만 3세 미만과 만 3세 이상 취학 전 연령으로 구분됨
- 만 3세 미만의 아동돌봄시설은 탁아소(Krippe)로 주로 불리며, 만 3세 이상 취학 전 연령은 유치원(Kindergarten)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, 이를 통틀어 아동일일보육시설 (Kindertagesstätte) 또는 흔히 줄여서 KiTa로 불림
- 기본적으로 독일의 영유아보육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, 이는 부모의 소득 또는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주별, 도시별로 다르게 책정됨
- 보육비는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50,000유로의 소득을 가진 부모의 경우 123유로에서 280유로의 범위이며, 베를린에서는 2018년 8월 1일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

So viele Kinder kommen auf einen Erzieher im Kindergarten



https://www.welt.de/wirtschaft/article165789005/Was-Sie-wissen-sollten-bevor-Sie-ueber-Ihre-Kita-meckern.html

| **그림 1** | OECD 보육종사자 1인당 영유아 수 (2017)

• 독일의 영유아보육시설은 세계에서도 최상위급인데, 3세 미만의 탁아시설의 경우는 스웨덴에 이어서 두 번째, 3세 이상의 보육시설의 경우는 호주, 스웨덴,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시설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관련 연방 법률

• 연방 사회보장법(Sozialgesetzbuch) 제8권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(Kinder-Jugendhilfe)을 명시하고 있으며,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는 제24조에서 일일보육시설 및 영유아 돌봄 촉진에 관한 권리(§ 24 Anspruch auf Förderung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)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음

사회보장법 제8권 - 영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-

제24조 일일보육시설 및 영유아 돌봄 촉진에 대한 권리

- (1)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관련 시설 또는 일일가정보육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 - 1. 아동이 자립하고 책임감 있고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
 - 2. 양육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
 - a. 유급으로 고용되어 있거나, 채용되거나, 구직 중인 경우
 - b. 직업 훈련 과정, 학교 또는 대학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
 - c. 이 법 제2권에 따라 근로자로 편입되는 경우
- 아동이 한 명의 양육권자와만 동거하는 경우, 이 사람이 법적 보호자를 대신한다. 일일 지원의 범위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다.
- (2) 만 1세가 된 아동은 만 3세 이전까지 가정보육 또는 아동돌봄 시설에서 조기 아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제1항 3문이 이에 유효하다.
- (3) 만 3세가 된 아동은 취학 전까지 일일보육시설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공공 청소년 지원기관은 이 연령대가 필요에 따라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의 아동은 아동돌봄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.
- • •
- (6) 추가적인 주(州)법은 이 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
- 3세 미만 아동지원법(Kinderförderungsgesetz)은 위의 사회보장법 제8권 개정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1세 이상 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위한 보육 권리 보장 및 정원의 확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
- 일일보육확충법(Tagesbetreuungsausbaugesetz)에서는 3세 미만 영유아에 필요한 보육을 제공하고,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의 질적인 향상, 보육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다양한 가정보육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

-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(KitaFinHG)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주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명시한 법률로, 2008~2013년은 21억 5천만 유로, 2013~2014년은 5억 8천만 유로, 2015~2018년은 5억 5천만 유로, 2017~2020년은 11억 2천만 유로, 2020~2021년은 10억 유로의 연방예산이 책정되어 있음
- 이 연방 예산은 보육시설의 신설, 확장, 이전, 개수, 장비 투자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, 장비 투자에 대한 사항은 각 주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

관련 주 정부 법률(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)

-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앞서 언급된 사회보장법의 세부실행을 위한 법률로 아동교 육법(Kinderbildungsgesetz NRW)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
- 이 법은 2019년 11월 전면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
 - 1. 더 많은 보육종사자에게 자금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
 - 2021년부터 매년 약 7억 5천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통해 10,000개 이상의 보육시설에서 직원고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,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
 - 2. 시설과 종사자에 대해 매년 비용상승에 대한 안전성 확보
 - 실제 비용 인상과 세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설 및 종사자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
 - 3. 가족센터¹⁾와 plusKITA. 언어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기회 보장
 - 가족센터당 연간보조금 인상과 언어교육 및 plusKITA²⁾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 원을 1억 유로로 확대
 - 4. 근무시간의 법적 규정 및 보장
 -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향상
 - 5. 보육관련 전문가 자문을 위한 보조금
 - 보육시설의 보육품질 향상과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보육시설(1,000유로) 및 종사자 (500유로)에 대해 지원
 - 6. 종사자의 훈련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
 -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차연도 8.000유로, 2. 3차연도 4.000유로의 교육후련비

¹⁾ 가족센터(Familenzentrum)는 부모가 각종 아동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문제해결과 교육 소외계층 및 지역의 사회적 참여 촉진 등 모든 계층에 더 평등한 기회를 얻도록 하고 있음

²⁾ plusKITA는 공정한 교육을 위한 NRW주의 특별한 보육기관으로 저소득층, 이민 배경의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

용을 보육시설에 지워

- 7. 가정보육의 개선
 - 보육 준비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 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정보육의 질을 강화
- 8. 추가적인 보육비 면제
 - 아동보육시설의 취학 전 마지막 2년 보육비 면제(현재 1년 보육비 면제에서 확대)
- 9. 필요 보육공간의 확보
 - 보육 수요와 필요가 있는 곳에 약 1억 유로를 지원하여 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
- 10. 보육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에 재정적 지원
 -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해 특별한 시간(이른 아침, 저녁, 주말 및 공휴일)의 보육 기회 를 제공

영유아보육 주요 사업 및 재원분담 현황

•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의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분야의 예산이 약 1.5억 유로 책정되어 있으며,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영유아보육에 편성되어 있음

| I | ┃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| 조 | 아토 | 미 | 청소녀 | 지위 | 보아 | 2021년 | 세인하모 |
|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| | $\overline{}$ | ~ 10 | - | | /\I/T | 7-01 | 20211 | MHGH |

| 2021년 세입항목 | 예산 (유로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| 108,957,200 | 71.10 |
|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| 30,000,000 | 19.58 |
| 연방교부금 | 10,412,800 | 6.79 |
| 준비금 | 2,234,000 | 1.46 |
| 기타 세입 | 1,500,000 | 0.98 |
|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주 정부 환급금 | 147,000 | 0.10 |
| 계 | 153,251,000 | 100.00 |

• 아동보육 분야 세출항목을 살펴보면, NRW주의 아동조기교육촉진법(KiBiz)에 따른 세출이 74.79%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방예산은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(KitaFinHG) 에 따른 교부금뿐이며, 대부분 주 정부 예산이 투입됨

┃ 표 2 ┃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 아동보육 분야 2021년 세출항목 (청소년 분야 제외)

| 2021년 세출항목 | 지출 (유로) | 비율(%)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세출 | 2,924,588,200 | 74.79 |
|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| 425,132,500 | 10.87 |
|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투자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| 115,000,000 | 2.94 |
|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| 108,957,200 | 2.79 |
| 사용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plusKITA 보조금 | 101,250,000 | 2.59 |
| 가정보육 보조금 | 81,131,400 | 2.07 |
| 가족센터 보조금 | 62,865,900 | 1.61 |
|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연화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* 게마인데 예산 20% 매칭 | 50,000,000 (10,000,000) | 1.28 |
| 특수한 경우의 아동보육을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| 21,000,000 | 0.54 |
| 기타 보조금 | 9,200,000 | 0.24 |
| 아동조기교육촉진법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 | 7,876,400 | 0.20 |
| 기타 게마인데 교부금 | 3,400,000 | 0.09 |
| 계 | 3,910,401,600 | 100.00 |

정리

- 사회보장법 제8권 제24조에서 제6항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의 영유아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법률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만 주 정부 법률을 허용하고 있음
- 그러나 강력한 연방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영유아보육 예산이 주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에 따른 연방교부금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주 정부의 예산임
- 다만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 주의 아동교육법에 명시된 보육서비스 유연성을 위한 지원금 등 일부 교부금에 대해서만 기초지자체인 게마인데가 전체 지원금의 20%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음
- 이는 독일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, 독일에서는 의무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주 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지며, 교육 예산 또한 대부분 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특성이 영유아보육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장인성 통신원

(독일 아헨공과대학교) drong85@naver.com